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1/2)

• 모든 구비서류(제출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[2026.05.13(수)]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●		신분증 (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)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
	●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• 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※ 온라인 발급의 경우 [발급용도(직접작성)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/ 제출처 : DL이앤씨㈜]
	●		인감도장	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※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대조 확인
	●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●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●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	•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로 '상세'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확인
	●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'상세'로 발급 ※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 내용
	●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국내 거주기간 확인 (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&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기간) ※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	●	복무확인서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※ 수도권외 타지역 거주자 기타지역으로 청약시(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)
	●	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•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※ 청약신청 전 외국인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함. (주택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)
	●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해당자	●		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	본인	•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●		한부모가족증명서		• 성평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●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3세대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'전체포함'으로 발급)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2/2)

해당자	●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경우</li> <li>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</li> <li>※ 성명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로 '상세'로 발급</li> </ul>
	●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</li> <li>※ 성명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로 '상세'로 발급</li> </ul>
	●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 자녀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을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</li> </ul>
	●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(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)</li> <li>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</li> <li>※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, 연락처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, 의료기관 직인날인)</li> </ul>
	●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</li> </ul>
●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</li> <li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"전부"로 발급</li> </ul>	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●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 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</li> <li>-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, 재직증명서</li> <li>-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li> <li>-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</li> <li>※ 유학, 연수(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)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li>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</li> </ul>
	●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</li> <li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</li> </ul>
	●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</li> <li>※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</li> <li>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</li> </ul>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●	위임장	본인 (청약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위임장(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)</li> </ul>
	●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</li> <li>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</li> <li>※ 온라인 발급의 경우 [발급용도(직접작성)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/ 제출처 : DL이앤씨(주)]</li> </ul>
	●	대리인 신분증 (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)	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</li> <li>※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</li> <li>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</li> </ul>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	●	부적격 소명 자료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</li> <li>※ "소형-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</li> <li>※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임이 명시된 공적 서류</li> <li>※ 기타 부적격 소명 서류</li> </ul>